

보도시점 (온라인) 2025. 12. 30.(화) 12:00
(지 면) 2025. 12. 31.(수) 조간

재난안전·민원 분야 지방공무원, 인사상 우대 강화한다

- 12월 31일부터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등 개정안 입법예고

- 격무 기피업무인 재난·안전 및 민원 분야 지방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특별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근속승진기간이 단축되는 등 인사상 인센티브가 강화된다.
 - 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, 「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 평정규칙」 개정안을 12월 31일(수)부터 2026년 2월 9일(월)까지 입법 예고 한다고 밝혔다.
 - 지방공무원의 공직활력 제고를 위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 - 첫째, 재난·안전 분야 우수공무원의 특별승진 기회가 확대된다.
 - 특별승진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어야 가능하나, 앞으로는 재난·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가 있거나 정부포상을 받은 7급 이하 공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.
 - 둘째, 재난·안전 및 민원 담당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이 단축된다.
 - 현재 재난·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속승진기간을 1년까지 단축할 수 있었으나, 앞으로는 최대 2년까지 단축하도록 의무화된다.
- ※ 근속승진 : 상위직급의 결원이 없어도 근속승진기간(7급 : 11년 이상 / 8급 : 7년 이상 / 9급 : 5년 6개월 이상)을 경과한 경우 승진 가능

- 또한, 기존에는 우대 규정이 없었던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격무·기피 업무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 면제와 근속승진기간 1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.
- 셋째, 재난·안전 및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승진 가산점 부여 기준 등을 개선한다.
 - 우선, 현행 규정상 재난·안전 부서에 일정 기간 근무하면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, 가산점 부여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재난·안전 부서에 보직된 때부터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.
 - 또한, 민원 담당 공무원의 경우에도 국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실적이 있거나 민원부서 근무 경력에 대해 가산점 부여를 의무화할 예정이다.
- 넷째,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승진심사 시 후보자 범위인 승진임용 배수범위가 확대*된다.
 - * (예시) ^{현행} 결원 1명당 7배수(7등 이내) → ^{개선} 결원 1명당 10배수(10등 이내)
- 그 밖에,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범위를 평정등급, 평정점수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성과관리 공정성을 강화할 예정이다.
-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, 팩스,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.
- 김민재 차관은 “재난·안전 및 민원 분야 등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이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”라며,
 - “앞으로도 주민 생활 접점에서 최선을 다해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자치혁신실 지방인사제도과	책임자	과 장	구효선 (044-205-3341)
		담당자	서기관	오연순 (044-205-3342)

참고

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등 개정안 주요내용

구분		현행	개정안
특별승진 기회 확대 ※ 임용령·연구지도직 규정(대통령령) 개정	재난 안전	▶재난·안전분야 4급 이하 성과 우수자는 정원 내 특별승진 가능 * (격무·기피업무 특별승진 대상) 재난·안전	▶재난·안전분야 7급 이하 성과 우수자 또는 정부포상 수상자를 정원 외 특별승진 허용 * (격무·기피업무 특별승진 대상) 재난·안전 + 민원 분야 추가
	민원	▶관련 규정 없음	▶근속승진기간 1년 단축 및 승진임용 배수범위 면제(재량)
근속승진 우대 ※ 임용령(대통령령) 개정	재난 안전	▶근속승진기간 1년 단축(재량) ▶승진임용 배수범위 면제 가능(재량)	▶근속승진기간 2년 단축(의무) ▶ 표창 수상자 승진임용 배수범위 면제(재량)
	민원	▶관련 규정 없음	▶근속승진기간 1년 단축 및 승진임용 배수범위 면제(재량)
승진 가산점 우대 ※ 임용령·연구지도직 규정(대통령령), 평정규칙 개정	재난 안전	▶재난·안전 부서에 일정 기간 근무 후 가산점 부여(의무)	▶재난·안전 부서에 전보된 날부터 가산점 부여(의무)
	민원	▶관련 규정 없음	▶탁월한 실적 또는 민원 부서 근무경력에 따라 가산점 부여(의무)
승진임용 배수범위 확대 ※ 임용령(대통령령) 개정	5급 이하	▶결원 1명당 7배수 결원 2명당 5배수 . .	▶결원 1명당 10배수 결원 2명당 8배수 . .
	5급 이하	▶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범위 임용권자 재량	▶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